



#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수신자 전회원사

(참 조)

제 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을 공포 알림

1. 전자관보 제19309호(2023.3.28.)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4월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경유자동차 제한 규정 시행일 전부터 계속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운행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 및 시행('23.3.28)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붙임 : 전자관보 1부. [끝]

※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www.tourbus.or.kr](http://www.tourbus.or.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이사장  
(전 결)

협조자

시행 서전버조 23- 75호 ( 2023.03.29 ) 접수 ( )  
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11층) / <http://www.tourbus.or.kr>  
전화 02-422-0019 전송 02-418-0071 / / 공개

"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